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나가면
꼭 확인한다는 그 것!**

④ 임금체불편

임금체불 is 반칙!



원칙대로 지급해야
좋은 사장님!

임금원칙

- ✓ 현금(원화)로 (상품권, 물건 X),
-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계좌 입금 가능),
- ✓ 매달 한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 ✓ 근로계약에 정한 전액을!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임금=정당한 근로 대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급여, 봉급 등 명칭 불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예: 고객 자의로 낸 봉사료 등)
- ☑ 호의적·은혜적 금품
- ☑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Q1. 질문있어요!!

미린 임금
시간이 지나면
받지 못하나요?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상여금, 그 밖의 일체 금품 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임금을 못 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신고하시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채불임금신고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구조 신청 또는 직접 소송

Q2. 질문있어요!!

직원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퇴사했어요.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해도 되나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채권 상계는 금지

Q3. 질문있어요!!

회사 사정상 나중에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
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14일 이내
합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 연장 가능!

이 또한 **14일 이내** 이뤄져야 함!
그 이후엔 합의해도 법 위반

※ 지급기일 연장을 합의해도 지연이자 20%발생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예방점검의날

임금체불 없는 좋은 회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상담 | <http://1350.moel.go.kr/home>

